

##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기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에 참여 할 분사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창업진흥원장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모기업\*에서 분사 창업한지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 **모기업 기준** : 추천하는 분사창업기업과 전략적 관계를 구축 또는 예정하고 있는 내국 법인(대·중견·중소·공기업)

**지원규모** : 총 40억 원 이내(40개 과제 내외 선정)

**사업화 자금 구성**

○ 정부출연금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이내(1년간) 지원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부담\*

< 분사창업기업 사업지원금 구성 >

사업지원금(A+B)	정부지원금(A)	분사창업기업 대응자금(B)	
		현 금	현 물
100%	사업지원금의 70%	사업지원금의 10%이상	사업지원금의 20%이하

## 2. 신청자격 · 제출서류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모기업의 추천을 받은 기업으로서,

### 가.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의 창업기업(법인)\*

\* 최초 회사설립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 1]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나. 단, 신청기업은 아래 ①~③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접수일 기준으로 모기업 소속의 임직원 구성원 비율이 30% 이상일 것  
(단, 창업기업의 대표가 2년 이상 모기업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성원 비율 미적용)
- ② 접수일 기준 분사 창업기업의 구성원 지분율이 60% 이상일 것
- ③ 접수일 기준, 모기업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

\* 창업일은 법인기업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전원이 '신청자격 '가''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자격 '나'' ①항은 공동대표의 경우 1인 이상 해당되면 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신청 시 신청인 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최종선정자에 한함)

※ 모기업이 [별첨1]의 리스트에 해당 되는 경우, 모기업 추천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사전문의 후 접수 하여야 함

- 문의(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 □ 제출서류(필수)

- 분사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붙임1 양식)
- 모기업 추천서 (붙임2 양식)
-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접수일 기준)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19년 10월 24일(목) ~ 11월 14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신청·입력 이력이 있는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 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신청방법 : K-startup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 불가)

####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팀원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발표자료·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K-startup (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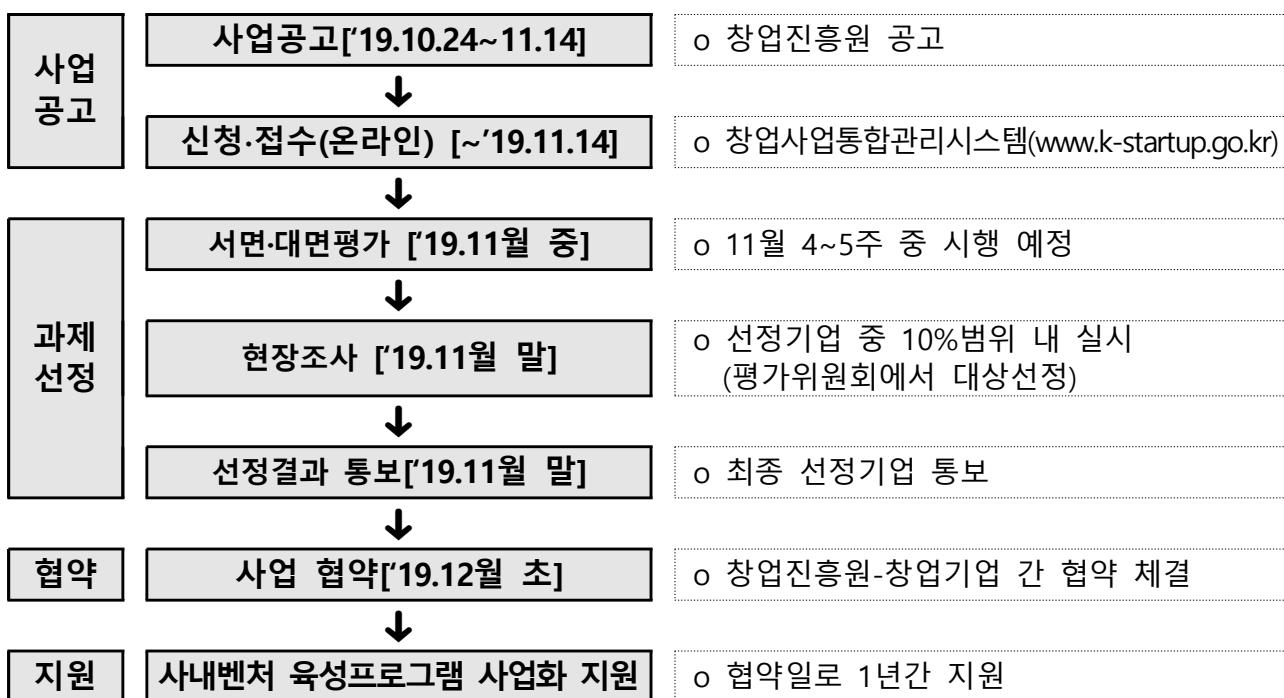
○ 선정방법 : 요건검토, 서면평가(필요시), 대면평가 실시

- 모기업의 추천팀 임을 고려하여 기술 사업화 및 수행역량을 중점 평가하여 대면평가를 기준으로 평점 60점 이상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단, 신청·접수결과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해 대면평가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문제인식 20%, 실현가능성 20%, 성장전략30%, 팀 구성 30%

- 일정 및 장소 : 11월 4~5주차(예정) / 서울 TIPS 타운
  - \* 세부내용은 발표평가 대상팀에 한해 재공지 예정
- 대면평가 시간 : 기업별 20분(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작성목차대로 내용을 기술 하되, 양식은 자유
  - \* 발표당일 자료는 USB에 담아 지참하거나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하여도 무방



※ 진행일정은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자(기업),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신청불가

\* [참고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외 지자체의 사업은 중복 검토 대상 사업에서 제외

- 단, 하단의 표에서 예시하는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사업 신청 가능 예시 유형 >

- ☞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지원(신청)제외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해당 사업의 협약 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 \* 단, 기 선정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
- ☞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지식거래조건부 지식 사업화지원사업, 마케팅플랫폼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 사업비 집행 간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 '스마트창작터(앱창업전문기관, 스마트앱창작터), 신사업창업사관학교(소상공인사관 학교)'에서 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 \* 단, 선정될 경우 기 지원금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 2016년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완료 (협약종료)한 자는 신청(지원)이 가능하나,
  -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종료가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
    - 1천만원 이하 수혜자는 지원결정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1천만원 초과하는 지원금의 수혜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동 사업의 최종 확정금액에서 차감 후 지원
  - \* 지원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다수일 경우 사업당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차감 후 지원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sup>\*</sup>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 선정 후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6. 문의처

###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사업신청 문의처

-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02-3440-7300, 7330, 7305, 7307, 7303

불임      1. 사업계획서(양식)

자료      2. 모기업 추천서(양식)

별첨      1. 사내벤처 운영기업 현황  
자료      2. 모기업 안내문(모기업 출신의 분사창업기업 추천에 대한 안내)  
              3.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사내벤처 세부관리기준  
              4.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자료      1. 창업 인정기준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3. 사업설명회 일정